

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옥,
김혜영, 심미경, 유만희,
이종태, 정지웅, 최윤희
의원(9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
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
이병윤, 이상욱, 이종배,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
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44
명)

1. 제안이유

-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 의무비율인 1% 이상 구매해야 함
-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‘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’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0.87%(본청 1.2%, 지원청 0.77%), 2021년 0.78%(본청 1.24%, 지원청 0.65%), 2022년 0.62%(본청 0.77%, 지원청 0.58%) 등 최근 3년동안 법정 의무비율인 1%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나,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다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사항과 법정 의무비율 등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으로
- 이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」을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용어 정의 (안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바.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사.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등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

제6조(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

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
2.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
3.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우선구매 의무 등)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

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

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,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- 1.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
- 2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·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)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